

[첨부2]

**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여론조사 대표경력
허용기준 지침**

1. 전·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은 불허한다.
2. 경력 입증 가능한 경력만 인정한다. (해당 기관·단체의 증명서 발급 기준)
 -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, 급여를 수급한 경력 2개 합25자 이내로 기입
 - 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의 경우 경력을 인정함
3. 임의적이거나 임시·한시적인 경력은 불허한다.
 - 기관 및 단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하더라도 존속 1년 미만인 기구·단체의 경력
 - 존속 1년 이상의 기구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임의단체와 모임은 불허
4.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선거기구, 후원단체, 연구단체, 기념사업회 등의 영리·비영리단체의 대표경력은 불허한다. 다만, 재직증명, 법인등기부상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특정정치인의 이름은 포함할 수 없고, 최종적으로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5. 기관 및 단체의 명칭은 법적등록명칭 또는 공식명칭을 사용한다.

적용예시

- 청와대 경력은 '대통령비서실 행정관' 등으로 통일
- 김대중정부, 노무현정부, 문재인정부, 국민의정부, 참여정부, 촛불정부 등 : 불허
- ○○○선대위, ○○○선거대책위원회, ○○○선대본 등 : 불허
- ○○○를사랑하는모임 회장, ○사모 카페 운영자, ○사모 지부장 등 : 불허
- ○○○대통령후보 유세단장, ○○○대통령후보 특보 : 불허
- ○○○시·도지사, ○○○당대표, ○○○국회의원, ○○○장관 정책특보 등 : 불허
→ 국회의원 보좌관,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: 허용
-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를 반드시 표기함

6. 소속기관·단체명과 직함(공식적인 직위)은 함께 사용해야만 하고, 소속기관과 단체명 하나만 사용하는 것은 불허한다.

적용예시

- 경실련 임원 : 불허 →(허용) 경실련 사무처장

7. 학력, 학위의 경우 학교명과 함께 사용한다.

적용예시

- 정치학 박사 : 불허 →(허용)○○대 정치학 박사

8. 출마경력 시 당명, 선거명, 선거구명을 함께 사용한다.

· 예비후보는 불허

적용예시

- 종로구의회예비후보, 민주당 후보, 19대국회의원후보 : 불허

→(허용)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,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

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

9. 1 ~ 8 외의 불허·허용기준은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.